

# 「전기제품 안전관리」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 산자부 기술표준원 「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 추진 -

산업자원부 제공

-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현재,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 \* 입법예고기간 " 07.2.28 ~ 3.19(20일간)
- 앞으로 전기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제품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쉬워지고 신제품 설계단계에서 부터 기업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밖에도, 불법·불량 전기제품 유통정보를 언론·대형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관 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해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중지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을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I.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 기술발전·수요변화로 기존 인증제도에 의한 안전관리 한계
  - 다양하고 까다로운 신개발제품 보급이 증가하고 소비자안전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필요
  - 기업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
    - \* 현재, 247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
  - 신제품 시장진입 애로해소와 인증비용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 인증시장개방·인증마크상호인정에 대비한 제도개선 필요
  -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제도 채택이 국제적인 추세로 세계각국의 인증제도가 자율안전확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자율안전확인 기반의 외국인증마크 : EU CE, 미국 UL, 일본 PSE 등
  - FTA/MRA·DDA협상시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요구 증가
- 기타 법령운영상 미비점 개선필요
  - 불법전기용품 대역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정보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등

### II. 주요 개정내용

- 위해도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관리방법을 차별화
  - (1)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낮은 품목은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도록 함
    -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
    - 전선·퓨즈·전열기구 등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 자율안전확인을 위해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제품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신고시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유효기간: 3년)
      - 향후, 시험기관지정과 신고의무에 대한 자율화 검토

- (2) 기업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자율성은 보장하되, 범위반에 대한 벌칙은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

- (1) 불법전기용품을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불법전기용품 대여」는 「불법전기용품 제조·판매」와는 성격이 달라 처벌이 곤란한 실정임
  -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처벌기준을 적용
    -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안전성조사」 실시근거 마련
  -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해확산 방지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3) 유통중인 전기용품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불량 전기용품 증가가 예상됨
  - 백화점·대형유통업체·언론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하여 시장사후관리 기능강화

##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 개요

-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한 인증제도이며, 세계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있음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974년 제정)
  -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대상 : 247개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전기기기류 132 품목
  - 전기톱, 드라이버 등 전동공구 17품목
  - TV, 오디오 등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26품목
  - 모니터,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 9품목
  - 형광등기구, 램프 등 조명기기 18품목
  - 전선, 스위치 등 전선 및 전기부품 45품목

○ 안전인증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군포)
- 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 한국전자파연구원(경기 용인)

□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인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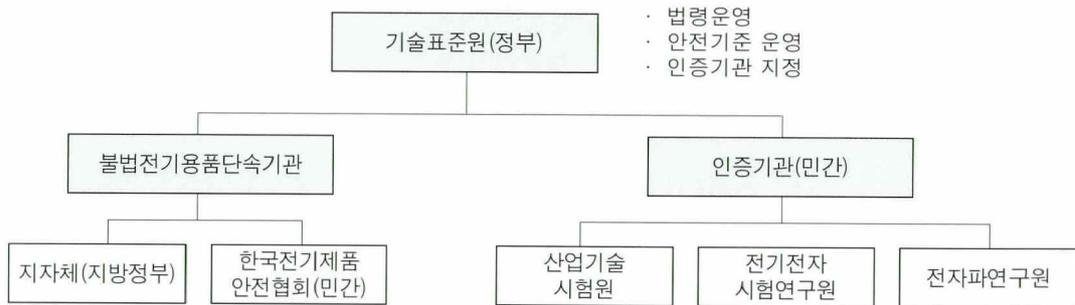


○ 인증방법(신청서류: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 부품명세표)

- 공장심사: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확인
- 제품시험: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

\* 안전인증 처리기간: 45일 이내

□ 제도 운영체계



□ 사후관리

- 정기검사: 연1회 이상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안전인증기관)
- 시판품 조사: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정부)
- 불법전기용품조사: 시·도지사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시중 유통제품, 인터넷 쇼핑몰, 세관 통관자료에 의한 조사

#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생산정보화로"

- '07년도 중소기업생산정보화사업 81억, 162개사 지원 -

중소기업청 제공

- 중소기업청(廳長:李賢在)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저조(중소기업(2.3%), 대기업(11.6%))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62개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생산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은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설비 제어, 제품정보 수집·분석 등 생산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 공정을 제어·감시해 경영자 및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산현장의 정보화사업이다. 동 사업을 공정의 진단·설계 등 공정혁신과 연계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금년도에는 511개 중소기업이 신청·접수하여 현장평가·사전진단 및 심사평가 절차 등을 거쳐 162개 중소기업(신규:136개, 개선 26) 선정하였다
  
- 선정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POP, MES등의 생산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생산현장의 기계, 설비, 작업자 및 생산품으로부터 생산시점의 변화하는 데이터를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수집하여 정보처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관리지수나 지표로 변환해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생산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생산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 (스케줄링, 작업지시, 품질관리, 작업실적 집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다
  
- 올해는 수요자(참여기업) 중심의 사업추진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생산환경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 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리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사전진단제"를 도입하고 ② 중소기업 지원자의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신청기회를 확대(연 1회 2회)하였고  
 ○ 기 지원기업('02년 ~ '06년) 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26개사를 개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물류 및  
 제품개발 등과 연계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제품수명주기 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등 업그레이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지원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ERP 등 정보화구축사업과의 연계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  
 한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신영금속(주) 울산공장은 프레스와 용접설비에 터치스크린 방식 생산정보관리시스템(POP) 단말기를 설  
 치하여 실시간 생산 실적관리 및 제조정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가동되지 않았던 생산공정의 가동율은 21%로 향상하였고, 작업  
 준비 및 생산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각각 75%, 80% 감소하는 등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06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구축 성과>

#### ◆ 조사개요

- '06년도 생산정보화 사업을 수행 · 완료한 19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06. 9 실시 / 148  
 개사 회수)

#### ◆ 조사결과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효과는 응답기업 148개 중 119개 중소기업(80.4%)에서 생산정보시  
 스템 구축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성적 효과로는 실시간 정보처리기능 향상 부분이 4.2점(만점: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생산정보시스템의 정성적 효과 >

(단위 : 점)

구 분	정보처리 기능향상	의사결정 기능향상	생산공정의 최적화	업무수행 능력개선	제조문제점 대응력	평 균
점 수	4.2	3.8	3.7	4.0	3.6	3.9

#### < 생산정보시스템의 정량적 효과 >

(단위 : %)

구 분	재고율	생산 리드타임	제공률	데이터 도입시간	서류 작업감소	불량률 감소	배달성과	예측 정확도
결 과	25.6	17.0	24.3	71.2	64.7	25.7	20.1	30.8

○ 구축된 생산정보 시스템을 97.7%이상이 보통수준 이상으로 사용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음